청주교육대학교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 9. 21. 규정 제1449호 1차 개정 2019. 9. 16. 규칙 제1492호 2차 개정 2020. 10. 22. 규칙 제155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학입시공정관리 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,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5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10.22.>

- ②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대학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
- 2. 대학입학전형의 공정 관리
- 3. 대학입학전형의 자체감사
- 4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
- 5. 기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제5조(의무)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

- 1. 위원회 활동의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2. 지원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한다. <개정 2020.10.22.>
- 3.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위반되는 원인이나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보고)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2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9. 16. 개정 제1492호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10. 22. 개정 제1551호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